



나눔터

2004·여름

제47호

2●원다! 상담소

4●여기는 상담실 | 아동성폭력 피해자 부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

| 성폭력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을 위한 집단 상담교육을 진행하며

8●열림터 이야기 | 열림터 10주년을 준비하며

12●하남이야기 |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자매애

14●인터뷰 : 박미영 경위 | 올 4월부터 신설된 여성조사신청권 제도

16●나눔터 기획 I | '북경행동강령' 선언후 10년, 반성폭력 정책의 어제와 내일

24●나눔터 학술 I | 군대내 성폭력, 친밀성과 폭력의 경계짓기

30●나눔터 학술 II | 그들의 명예에는 양심이 없다

36●나눔터 기획 II | 우리는 전시성폭력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한다

40●회원소모임 동정 | 시끌벅적 재미나는 회원소모임들

41●상담현장 Q&A

42●지금 법정에서는 |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44●상담원 선생님 인터뷰 | 하진옥 선생님은 멋쟁이!

46●활동가 인터뷰 | 직장체험, 어땠나요?

48●상담소 활동후기

49●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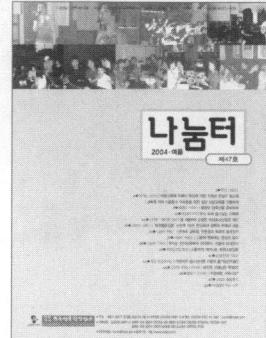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02)338-2890~2 • 팩스 (02)338-7122 • E-Mail : ksvrc@korea.com

• 전화상담 : (02)338-5801~2 성폭력 피해 생존자 단기보호시설 열림터 입소문의 (02)338-3562/Fax (02)338-1007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입소문의 (02)338-3563

• 인터넷상담 : ksvrc@chol.com • 홈페이지 : <http://www.sisters.or.kr>

된다! 상담소



표지사진 :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기금마련 문화행사
"성폭력 근절, 서포터즈가 되자" (2004. 5.29)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국방부의 공식 협조를 얻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4/8)

상담원 상반기 모꼬지

전남 소쇄원 및 고창 음성까지 가는 내내 피어있는 들풀과 들꽃들은 그동안 상담현장에서 지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상반기 상담원 모꼬지를 통해 서로 많이 친해지고 힘이 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4/17)

4월 월례포럼



“단순강간의 형사법상 판단기준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2004년 2월에 석사논문을 발표한 장임다혜씨와 함께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4/27)

초등학교 고학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우리들의 약속” 시사회



4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본 상담소에서는 개소 13주년 기념 성폭력예방 애니메이션 시사회를 열



워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4/30)

미군 및 영국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를 규탄하는 집회

미군의 반인권적 전쟁범죄를 규탄하고 명분없는 한국군 파병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미대사관앞에서 타 여성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12)

군산개복동 화재참사사건 무죄판결 규탄 집회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 공동집회가 있었습니다. (5/21)

“성폭력근절 서포터즈가 되자 !!”



화행사인 “성폭력 근절, 서포터즈가 되자!!”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의 일일호프 와는 달리 문화공연을 접목해서 호응이 높았고, 이 날 당일에 상담소의 후원을 결심

었습니다. 이 시 사회는 초등학생이 이용할 만한 영상자료가 없어서 안타까

해주신 분이 60여명이 넘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29)

609차 정기수요집회 주관



지난 6월 2일 본 상담소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12년간 주관해온 수요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이 시위에서 전시성 폭력 피해생존자인 “종군위안부” 할머니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새삼 변함없이 12년 간이나 수요시위를 이끌어오신 분들께 한 없는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6/2)

회원한마당 “내”유희



며칠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불안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아니라 다른 까 19일 아침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급하게 상담소 내로 자리를 바꿔 “내”유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준비했던 게임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6/19)

파병반대 광화문 추모집회

이라크 과격 무장 테러집단에 피랍되었던 김선일씨가 사망하였습니다.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파병반대, 전쟁반대 목소리에 본 상담소도 함께 합니다. (6/23)

아동성폭력 피해자 부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본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본 상담소 상담통계(2003년)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21.2%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담자를 살펴봤을 때 전체 아동성폭력피해 상담 602건 중 78.2%인 471건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상담이었고, 이중 63.3%가 가족이 상담한 경우이다. 이렇듯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연령의 특성상 피해를 인지하고 상담하는 것은 대부분 성인 보호자이다.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그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로 나타나는 ‘부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려 한다.)

대부분의 아동성폭력피해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보호의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아동성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미비한 사회적 지원 속에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피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건해결, 이후 후유증에 관련된 문제까지 떠 안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부모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보호자로서 자녀를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 피해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겪게 될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한다. 또한, 피해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피해자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대한 관심의 차이, 부부간의 갈등 등 가족 내 구성원간의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동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성과 관련된 질문이나 행동들에 난감함을 나타내도 한다. 그러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려질 것이 걱정되어 의논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족 내에서 조차 피해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등의 높은 스트레스와 고립감, 아이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위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참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들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성폭력피해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 가정에 그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그 동안 지속상담을 해온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4년 4월 14일~5월 1일 까지 총 5회에 걸쳐 집단상담 형태의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을 위한 집단 상담교육을 진행하며

이효숙(前 열림터 부장, 13기 상담원)

상담현장에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폭력 피해 이후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또 피해자의 부모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피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가족 내 갈등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 왔다.

이에 이번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부모교육은 피해자의 부모들이 갖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피해 아동의 진정한 지원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갈 수 있도록 돋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크게 부모를 위한 접근과 아동을 위한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감정 표현하기]

우선 부모를 위한 접근으로 시작한 것은 구성원들이 피해사실과 당시와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주변인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지집단 형태로 문제를 드러내고, 경험을 나누었을 때 고립된 경험에서 벗어나, 문제를 바라볼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착안하여 비록 안정된 지지집단의 틀은 아니었지만, 분노를 비롯한 피해와 관련된 감정, 숨겨놓은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구성원과의 공감대 속에 집단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부모들은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교 평가하는 모임이 아닌 이해적이고, 지지적인 집단역동이 형성되었다. 부모들은 이를 통해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탐색하게 되었고, 자녀와 자연스럽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되었다.

[성에 대한 가치관 점검하기]

많은 부모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아이가 보이는 여러 가지 징후와 질문들에 대해 당황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숨기려하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피해아동에게 성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지식을 접할 기회를 차단시키고,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성적인 억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부모들의 성과 관련한 생각들을 살펴보며, 자신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성장단계 별 성지식 배우기]

이러한 탐색 후에는 성교육을 통해 아동 성장단계 별 성지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보다 자연스러운 성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이는 다른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에 일반적인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나 필요한 지식과 함께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넓은

시각에서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성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아동을 대하는 방식 점검하기]

대부분의 부모들이 피해 이후 나타난 아동의 변화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아이가 피해 이전과 다른 질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이를 피해 후유증의 하나로 걱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아동이 피해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부모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내고자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질문과 답의 형태로 대화하는 것 등이다.

아동을 지나치게 피해와 연관하여 살피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통합된 자아를 형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돋고, 아이가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았다. 집단 구성원들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여, 독립심과 자존감을 높여 아동이 피해에 구속되지 않도록 돋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다.

[가족관계에서의 역기능 살펴보기]

성폭력피해로 인해 가족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힘든 상황들에 놓이게 된다. 특히 피해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분노를 잘못 표현할 경우, 가족 내 갈등과 함께, 다른 가족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구조가 혼란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부모교육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을 살펴보고, 원만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이번 교육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다양한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에게는 무척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또한 성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시각의 전환이 오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하고 통합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동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동이 지닌 잠재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지지한 부모들은 피해아동이 성숙된 자아를 형성하고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의 역기능적인 교류에서 오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 환경의 교류가 평등한 관계형성을 위한 성문화, 인권의 존중, 신뢰하고 의지 할 수 있는 사회로 이루어진다면, 아동과 사회환경과의 교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자아형성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갖춘 아동의 성장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들에게 극복의 용기와 희망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도록 한다면 성폭력 피해는 더 이상의 문제도 병도 아니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과 함께 그 주변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풍부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번 부모교육이 단초가 되길 바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제작한 성폭력 예방비디오 시리즈

▶ 우리들의 약속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성폭력예방비디오(2003년)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성폭력 예방 비디오 “우리들의 약속”은 또래 사이에서 가벼운 장난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어른용 소책자를 따로 제작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7,000원(우송료 포함)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II

유아대상 성폭력예방비디오(2002년)



1993년에 제작되었던 ‘내 몸은 내가 지켜요’를 2002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유아대상 성폭력예방비디오. 5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노래와 율동, 애니메이션 등을 삽입하여 꾸몄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8분, 3부(좋은 느낌? 싫은느낌, 소중한 나의 몸, 싫다고 말해요)로 구성되어 있다. – 20,000원(우송료 포함)

▶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청소년 성폭력예방비디오(1998년)



건강한 성규범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끄는 성교육이 부재한 환경 속에서 온갖 일탈적인 성문화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작된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왜곡된 의사소통이 성폭력이라는 무서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토론자료가 담긴 팜플렛도 함께 마련하였다. – 20,000원(우송료 포함)

요즘 열림터에는 어덟 명이 생활하고 있다. 입소자 중 청소년이 일곱 명인데 모두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십대 성인 한 명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에서 제공하는 실내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다.

열림터 10주년을 준비하며

조중신 (본 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1. 요즘 열림터에서는

열림터 운영의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활동은 입소자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건강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성폭력피해로 원 가족에서 분리되어 입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과 지원을 통해 그 혼란과 아픔을 다독이고 새로운 자매애, 가족애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열림터에 입소하면 우선 전반적인 건강검진과 신체적인 외상 등을 살피고 치료하는 의료적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법적 지원과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리상담지원, 전학·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지원,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자기방어교육 및 성교육, 진로탐색과 취업지원, 자립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위탁가정·자립공동체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열림터 입소자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청소년기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지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입소자의 적성, 학업 수행도와 본인의 희망 등을 파악하여 인문·실업계,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에 전학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의 연계를 도모한다. 전학이나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별 학습지도를 통하여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소자가 중학생일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여러번 전학하지 않도록

록 졸업까지 열림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생인 경우 마땅한 장기시설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자립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원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경우 취업하면 청소년 근로자 아파트나 독립 세대주로 독립하도록 돕고, 아직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장기 자립공동체인 하담으로 연계하고 있다.

올해 입소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획된 사업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이다. 성폭력 피해, 특히 근친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다른 또래 청소년들보다 정서적 지지나 문화체험의 부족 등으로 정서적인 부분과 지적측면이 계발되지 못하거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타인과 적절한 관계 맺기, 좋고 싫음에 대한 자기표현, 자신의 안전에 대한 방어능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진로계획 세우기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퇴소 이후의 자립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새롭게 만나는 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4월부터 심리평가를 통하여 입소자들의 정서적, 지적 측면, 적성 등을 파악하였고 충분한 욕구조사와 정보수집을 통해 내면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탐색하였다. 7월부터는 각자가 선택한 취미, 특기, 체력단련 프로그램(원예프로그램, 방송 재즈 댄스학원, 요리학원, 태권도학원 등)에 꾸준히 참여하고, 11월에는 자신감 척도를 재평가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자 한다.

“나만의 특별한 여름캠프”라는 주제로 진행될 프로그램은 이전까지 열림터 입소자 전부가 일괄적으로 참석해온 동계, 하계 집단캠프의 형식을 벗어나 각자가 탐색하고 선택한 청소년 대상 캠프에 참여해 보도록 시도하였다. 스스로네트에서 진행하는 중학생 대상의 “친구를 사귀는 방법” 캠프 · 사물놀이 · 구슬공예 · 도예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안성 마노 캠프, 한탄강에서의 레프팅 캠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선생님 힘내세요”는 생활시설 업무의 소진함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담당자의 욕구에 따라 8월에 ‘여행지도자 과정’, ‘자아를 찾아가는 연극 여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열림터 상근활동가들은 평소에 입소자의 상담과 생

활지원을 하면서 월 1회 상담사례연구를 통해 전문심리상담가의 수퍼비전을 받고 있으며 입소자 담당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2. 열림터 10년 활동의 성과를 진단하고 전망 세우기

올 9월로 열림터는 개소 10주년을 맞이한다.

9년 상담소가 개소하고 나서 상담을 통해 들어온 가슴아픈 사연들 속에 친족성폭력 등 지속적인 피해를 겪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피신하여 생활하면서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데 뜻을 함께 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94년 “모든 피해여성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의 의미를 담아 열림터가 문을 연 후 10년 동안 250여 명이 입소하여 생활해 왔다.

열림터가 처음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개소된 이후 전국에는 15개의 보호시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중장기시설인 성폭력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 하담도 개소하였다.

개소 10주년 기념일인 9월 14일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지원 현황 연구분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담당자들과 아동,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의료, 법률, 상담, 사회복지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상담사례연구분석을 통한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모델개발과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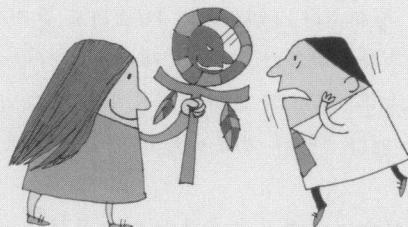
10월 21일, 22일에는 1박 2일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실무자 및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친족성폭력의 특성과 지원지침을 훈련하는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관련 담당실무자들이 친족성폭력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을 제고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1월말에는 “친족성폭력 상담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동성폭력, 직장내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등은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상담지원매뉴얼이 개발되고 발간되어 왔으나 친족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 상담지원매뉴얼에는 친족성폭력의 특성 및 후유증,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발생 가정의 특성 및 개입전략, 친족성폭력사건의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 가이드, 지원체계 연계 및 활용방안 등이 수록될 것이다.

이제 피해자 보호시설의 사업활동에서 피해생존자 보호와 치유에 법적,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다. 또한 피해자 지원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의료진 등의 관련담당자들의 의식의 변화 촉구와 네트워킹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입소자의 특성과 지원방식에 대한 분석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그동안 입소자들이 보호시설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증적으로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전망으로 적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퇴소한 피해생존자들의 극복과정에 대한 종단 연구,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 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담당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업무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피해생존자 자립지원공동체 「하담이야기」

지난 3월 16일 하담 열림식을 하고 딱 3달이 지났다. 그동안 하담에는 4명의 식구가 생겼고 조금씩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자매애

원사 (본 상담소 부설 생존자 자립공동체 하담지기)

1. 하담월 하담일 오전 8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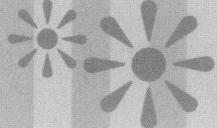
엉겨 붙어 떨어지지 않는 매트리스의 기운을 간신히 털고 일어났다. '창오'만 아침식사를 마치고 반갑게 맞아준다. 창오는 하담의 제일 큰 언니다. 그야말로 '아침형 인간'~ 하담지기인 나를 포함하여 몇몇에게는 과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인 새벽 6시에 일어난단다. 혁~ 부러울 뿐이다. 참 부지런하고 섬세한 창오, 그녀는 감각도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아, '타라'가 모르는 것은 모두 그녀가 대답해준다고 칭찬한다.

'타라'와 '유케'는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다. 둘은 '늦은밤/새벽형 인간'이어서 새벽 4시나 되어야 주로 자는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 게을러 보이는 쪽은 타라와 유케다. 이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은 아닐까? 깨어있는 시간은 사실 비슷한데, 다만 자는 시간이 환한 대낮이라 하여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지...

2. 일상의 '수다'로 감정을 털고, 감정을 읽고...

타라는 오늘도 취업준비를 하느라 학원에 간다. 컴퓨터학원에 갔다가 요리학원까지 갔다 오면 늦은 9시가 넘은 시간. 식사시간이 애매해서 걱정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조금씩 쌓여 갈텐데... 도시락이라도 싸갖고 다니면 좋으련만, 밥을 먹을 시간이 나지는 않는다고 한다. 타라는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자신의 얘기를 참 잘해준다. 어떤 때는 TV소리도 들리지 않게 계속 얘기해서 "나, TV 보고 싶은데"라고 말을 해야 멈출까? 하하하. 타라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농담도 잘하고 솔직해서 타라 때문에 자주 웃게 된다. 오늘은 '유케'가 스파게티를 맛있게 해놔서,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 그녀는 너무 행복하게 저녁을 먹고 있다. "일년 내내 이렇게 먹고 싶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유케가 하담에 오면서 우리 배란다에는 허브들과 화초들로 가득찼다. 그녀가 특히 허브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두통에 좋은 허브, 수면장애에 좋은 허브, 배아플 때 먹는 허브, 우울할 때 먹는 허브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는 가끔 잎을 떼어 내어 함께 차를 마신다~ 후후후 이것이 웨~빙족의 삶이 아니겠는가!!



3. 때론 피곤한 그리고 우울한 일상

'사라'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요즘 우울하다고 한다. 친구를 통해 가해자 소식을 들었고 그 내용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좋겠다고... 우리 모두는 성폭력피해생존자다. 모두들 그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분노스러운지 아니까, 짠한 마음이 생긴다. 요즘 부쩍 성폭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때론 서로 너무 우울해지기도 한다. 말함으로써 그만큼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서로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4. 하담인회의=자매회의=생활회의=가족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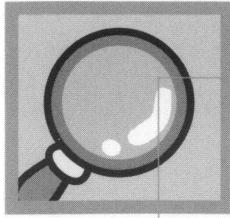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한다. 서로 생활한지 2달이 넘었지만 서로 생활시간대가 같지 않아 어떤 때는 얼굴도 못보고 하루가 지나가기도 한다. 초기 세 명까지는 조금씩 함께 할 시간을 내기도 했지만, 4명이 되니 그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때 즈음 각각 스케줄이 생기면서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우린 회의 때 생활나눔을 한다. 일주일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나누고 서로 논의할 일에 대해서도 나눈다. 오늘은 사라가 진행을 하는 회의다. 사라가 진행을 참 잘한다. 생활나눔을 하고 사라가 제안을 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서로를 알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요."라고. 멋진 일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각자 고민을 해서 다음주 회의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하담은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조금씩 발을 뻗고 있는 중이다. 최대한 자율적인 공동체이기에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는 공동의 생활체. 생활에서의 역할을 분담해서 책임을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등이 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연대의 끈, 자매의 끈이 있다. 서로의 아픔을 함부로 보지 않는 기본 소양, 나와 유사한 아픔을 가진 자매에 대한 애정이 바로 그런 끈인 것이다.

하담지기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담인들은 어디까지 기본 규칙을 정해서 움직일까? 하담에는 어떤 분들이 오게 될까? 이 모든 것은 지금 새롭게 새로운 판으로 짜여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담인에 의해서 하담지기에 의해서... 현실을 기반에 두고, 이상은 가슴에 안고 하담은 한 장 한 장 얇은 층의 꿈과 현실을 쌓아간다. 어떤 층은 시커먼 해서 다들 버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끔 두통을 앓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우리 자신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올리고 싶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으리라고 믿고 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자매애가 그 결실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여기에 쓰인 이름은 세계 각국 여신의 이름을 땄다.



인터뷰 : 박미영 경위 -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

올 4월부터 신설된 여성조사신청권 제도



지난 2004년 4월 27일, 경찰청에서는 대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여성조사신청권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미영 경위의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 나눔터 편집부

여성조사 신청권 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여성조사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된 배경은 일선에서 남자 경찰에 야간에 성매매 혹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부 남자경찰들이 10대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성폭행,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성조사 신청권을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일선에서는 이미 여성조사를 원할 경우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였던거지요. 단, 여경이 없거나 수사과정에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남자 형사가 여성 배치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편차없이 제도화시켜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실시에 관한 공문이 배포된 날짜는 4월 27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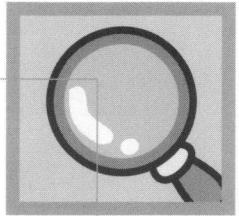
현재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여자 경찰이 없는 지역이 많고, 아직까지 여성 경찰들의 경우 형사계, 강력계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여자 경찰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수사능력을 보강하는 3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수사능력을 보강하고, 2월부터 꾸준히 전 경찰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적 관점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금녀구역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여성의 입장을 무조건 더 잘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을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자 경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들의 편이 되어준다거나 혹은 여성의 입

올 4월부터 신설된 여성조사신청권 제도



장을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일단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 여성들에게 남성 경찰들이 상대적으로 더 편견을 가지거나 조심성 없게 대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들 자체가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형사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경을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 수사과정이나 능력상의 차이 때문에 만든 제도라기보다는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언급한 여경 대상의 3주 특별교육에 여성관련 NGO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듣고, 양성평등교육과 피해자인권보호개념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성조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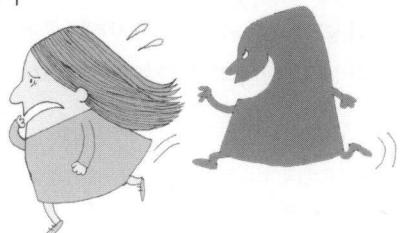
따로 서류 같은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선 형사들, 혹은 담당 형사에게 여경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담당 형사가 여성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민원신청 등을 통해 해당 경찰에게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서울경찰청에 문의하면 해결해줄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요?

일단, 현재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술 상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경우가 있는 성범죄관련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的 역할을 상담원이나 NGO 전문가의 대동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긴급하게 일어났는데 마침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수사관의 위치에 있지 않은 여경이라도 이때 진술과정에 동참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인권보호를 보다 제도화하고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터기획 I

‘북경행동강령’ 선언 후 10년, 반성폭력 정책의 어제와 내일¹⁾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 또는 사법 시행상의 관습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각 국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철폐하기 위한 종합대책 강구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대책의 효과적 방법에 관한 연구 추진을 촉구했다. 이후 ‘북경행동강령’은 각국의 반성폭력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발달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여성단체들이 폭력피해여성들에게 상담과 보호시설을 제공하면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 시작된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함께 법제정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 이러한 국내 여성인권운동의 영향과 함께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반성폭력 정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즉, 성폭력특별법(1994)과 가정폭력방지법(1997)에 이어, 성희롱 관련법(1999), 청소년성보호법(2000), 성매매방지법(2004) 등 여성폭력 관련법이 차례로 제정되고 관련 정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경행동강령’ 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성폭력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NGO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베이징+10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에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1)” 부분을 요약, 수정한 내용입니다.

1. 반성폭력 정책의 성과와 한계

(I)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우리나라 반성폭력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은 북경행동강령 선언 이전인 1994년 1월에 제정되었다. 당시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성폭력이 형법의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한계가 많음을 지적하고, 1991년부터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법추진운동을 벌였다. 성특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여 의원발의를 하였고, 각 정당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제정 운동 3년만에 법안이 마련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이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그 규제범위를 넓히고 형량도 높였다. 또한 사법처리절차의 특례를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시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비밀누설 금지와,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은 그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쳐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보완되고 있다. 1차 개정(1997)시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하고 가중처벌하며, 친족성폭력의 개념도 4촌이내의 혈족에서 2촌이내의 인척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기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차 개정(1998)에서는, 당시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여 카메라, 비디오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차개정(2003)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1회 진술을 위해 영상물로 진술과정을 촬영하고, 만약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에도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련된 방에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한 「남녀차별및금지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 두 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할 책임을 사업주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묻고 있으며, 연1회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

나눔터 기획 I

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담 정책 추진기구 설치

정부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는 6대 기본전략과제로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고 20대 정책과제로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선정하였다.

여성폭력 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광하다가, 2001년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별도의 행정부처로 출범하면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부는 성 폭력을 요보호여성문제에서 여성의 인권문제로, 피해자 사후보호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확대로, 지원서비스의 단편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가정폭력·성폭력근절 종합대책'(2002. 3)을 수립하였다.

중앙부처인 여성부는(권익증진국) 피해자 보호부분을,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가해자 처벌부분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기구는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복지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등의 다양한 체계로 존재하며 여성부의 계선기관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메칭펀드 방식으로 여성관련시설의 재정을 지원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 법과 제도의 철저한 시행 미흡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반성폭력 관련법과 제도가 빠르게 발전해온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살려 운영되었는가는 회의적이다.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남성중심적인 사법관행으로 10%미만의 고소율과, 50%이하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인 신뢰관계있는자의 동석제도나 진술녹화제도 등도 실제 운용에서 실효성이 매우 저조함이 많은 상담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에서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의 성교

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운용이 피해자에만 집중되었고 행위자와 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반성폭력 정책은 정책추진기구도 강력하지 못했고, 예산도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성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폭력적인 관행과 관습, 문화, 의식 등을 전환시키지 못한 것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본다.

성폭력 관련 연구나 교육, 홍보, 예방사업의 실시 측면을 보면, 정부의 연구는 우선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대부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히려 정책 모니터링과 제언, 상담을 토대로 한 피해자 관점에서의 법과 제도 분석 등 많은 조사, 연구는 NGO에 의해 수행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련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등 법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NGO 활동의 성장

한국사회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NGO가 주축이 되어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여성인권운동단체나 관련 상담소들은 서로 연대하여 법제정운동을 주도하고 법과 제도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가부장제 가족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여서 1980년대 이전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설립되면서 여성폭력추방운동이 시작되고, 이후 한국여성민우회(1987), 한국여성단체연합(1987), 한국성폭력상담소(1991) 등이 설립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며 여성폭력이 사회문제이며 범죄라는 사실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관련 법 제정도 NGO의 끈질긴 요구와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4. 과제

(1) 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경찰이나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1999)이나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2002), ‘성폭력사건 수사실무’(2004) 등에서 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여성폭력전담경찰·검사제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전담 재판

나눔터 기획 I

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폭력특별법에는 수사와 공판과정에 신뢰관계의 자를 동석할 수 있고, 더욱이 13세미만 어린이나 장애인은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고소율도 낮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2)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의 확대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는 즉각적인 의료적 지원과,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행히 2000년부터 정부에서 피해자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2004년에는 7억원의 의료비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38%만 사용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흥보부족과 집행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시, 후유증 치료비 지원과 필요 서류의 최소화 등의 효율적 운용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국 250여가 넘는 성폭력피해자 지정병원이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위해서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선행되어야 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법률지원은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2003년부터 무료법률지원을 시작하였다. 작년 한해동안 총 2,271건의 법률지원 중 가정폭력이 2,222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고,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은 41건으로 1.8%에 불과하다. 이는 민사사건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구조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담당자가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법률정보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오히려 2차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 담당자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률지원의 효과적 운영과 시행을 위한 관련단체, 관련인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

먼저 각 상담소간의 유기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위기전화 1366의 경우, 위기대처와 연계의 기능을 맡는 등의 확실한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개소가 활동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타나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경찰, 의료기관, 검찰, 재판부,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은 피해자 지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폭력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의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녹화와 비디오증언에 의한 법정증언 등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15개 영역의 장애 유형별 지원이 제대로 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현재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성폭력 보호시설도 피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경제적 자립까지 준비할 수 있는 중기 보호시설이 현재 1개소밖에 없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현실화

현재 전국의 성폭력 관련 상담소 중 약 60% 정도만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더우기 현재 지원되는 상담소의 정부 보조금 규모가 실제 지출되는 결산액의 평균 64%에 불과하다(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2003:49). 따라서 각 상담소에 대한 지원금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미지원 상담소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현행 성폭력상담소와 신고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3) 현행 법의 보완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은 ①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명시, ②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③ 부부강간의 처벌, ④ 강간죄의 객체 확대, ⑤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 ⑥ 형사소송시 피해자의 정 보권 보장 등이 되어야 한다.

나눔터기획 I

(4) 수사, 공판, 의료, 상담 담당자의 교육

경찰, 검찰, 재판부 등 사법담당자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의료인, 상담 관계자들 전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상별제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5)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책추진기구 강화

현재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폭력과 차별문제를 아우르며 법무부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들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국무총리실의 '성매매방지기획단'과 같은 법부처 차원의 강력한 추진기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여성부가 여성폭력 정책의 장·단기 청사진을 갖고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할 것이다.

(6) 여성폭력 관련 연구의 활성화

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각 법 집행 국가기관별로 유의미한 통계 항목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개발하고 이에 따른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상담 통계를 종합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전국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방안, 가해자교육 프로그램, 2차피해 요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7) 여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무엇보다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인지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여성단체의 법 홍보활동도 법 제정 초기에 그쳤고 일상적인 법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법을 인지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교육은 물론 각종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법의 내용을 정확히 교육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 ▶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차별과 폭력 등 여성인권 전반을 다루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 ▶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매체 종사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8) 가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성폭력은 가해자들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도업무가 처벌만 되었을 뿐 교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집행유예 선고 대상자들에게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병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해자 교육과 치료는 초보단계이다. 따라서 가해자 적극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9)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그동안 성폭력 추방운동을 시작하고 이끌어온 민간단체와 정부의 진정한 파트너쉽은 성폭력 추방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민·관의 협력체계, 파트너쉽 이란 둘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였을 때에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성폭력 추방을 위해 각자의 노하우와 조직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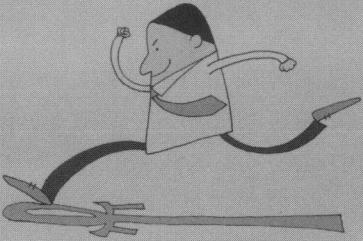
(10) NGO 활동의 강화

지금까지의 여성폭력 관련 NGO 활동이 피해자 지원과 법제정 운동 등에 주력해왔다 면, 이후에는 법,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항시적인 감시와 비판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한 구체적 제언의 기능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NGO 활동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자성적 성찰과 함께, 일정 정도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자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나눔터

학술 I



“군대내 성폭력, 친밀성과 폭력의 경계짓기”¹⁾

–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 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권김현영 (본 연구 공동연구자, 본 상담소 정보사업부)

1. 연구를 시작하며

2003년 7월 김일병의 자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군대내 가혹행위가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그 가혹행위 중에 고참병에 의한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충격을 받은 것은 비군인들이었다. 군대에 이미 다녀왔던 남자들은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했다. 몇십 년 전에 제대한 사람부터 최근에 전역한 사람까지 군대내에서 남성들간의 성폭력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실태조사는 이런 상황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조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연구과정 중에 서울역 등에서 만난 휴가병들은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잘못 설문에 응했다가는 영창에 갈지도 모른다면 열 명 중 일곱 여덟 명은 손사례를 치며 거절했다. 또 천편일률적인 응답을 한 한 부대의 설문 자체를 모두 폐기하기도 했다.

2.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연구조사 결과 밝혀진 성폭력 실태는 꽤 충격적인 수치로 나왔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15.4%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또한 직접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전체의 7.2%가 답했다. 더 심각한 사실은 피해를 입은 병사가 다시 가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가해자의 8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간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군대내에서 폭력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피해자 103명 중에서 1회 이하인 경우가 9건(8.7%)이었으며 2회 ~ 4회가 42건(40.8%), 5 ~ 6회가 13건(12.6%), 수시로가 31건(30.1%)으로 전체 응답자 중 83.5%가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의 양상은 포옹 70건(41.2%), 가슴 및 엉덩이 만지기 57건(33.5%), 성기만지기 22건(12.9%), 키스가 16건(9.4%),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이 2건(1.2%), 자위행위 강요 1건(0.6%),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가 2건(1.2%) 이었다. 혹자는 남자들끼리 포옹하고 가슴만지는 정도를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목격자의 경우 총 373건의 피해 유형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기만지기가 84건(22.5%)으로 피해자 응답의 2배에 달했으며, 성기삽입시도 또는 성기삽입은 총 19건(5.1%)으로 피해자 응답의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피해를 축소시켜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설문조사과정에서 “강제적”이었는지를 재확인했는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남성간의 성적 접촉은 단순히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군인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피해는 계급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었는데 피해자의 71.1%는 가해자로 선임병을 지목하였으며, 이 외에도 부사관 7.0%, 장교 3.1%로 총 81.2%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들이 가해를 하는 이유는 “그냥”, “장난으로”, “친밀감의 표시”라고 했다. 피해자들 역시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왜 그러는 걸까? 아마도 선임병이 되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걸까?

3. 뿌리 깊은 동성애 혐오증과 피해자 되기의 어려움

면접조사과정 중에 만났던 한 피해자는 자신이 이등병 때나 일병 때 고참들이 엉덩이 만지고 그랬지만 고참이 좋아서 그러는구나하고 이해했다고 한다. 일병딱지만 떼면 되니까, 군대생활 잘하려면 참는게 중요하니까..하면서 넘어갔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한 면접자는 피해경험보다는 가해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편하게 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 피해보다 더 싫은 것. 이것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되는 것의

두려움은 피해자는 곧 여성적인 존재 혹은 약한 존재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모욕을 감수하느니 시간이 지나 계급적 우위를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점 중 하나는 군대내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되어있던 가해자들의 동성애 혐오증이었다. 한 가해자는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신은 이성애자라는 걸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는 지금 당장 교도소에서 풀어준다고 해도 동성애나 동성에 대한 성적 취향 때문에 성폭력을 저질렀다고는 대답하지 않을거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동성애자 남성들은 군대 내에서 사실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군대내 성폭력은 철저하게 남성화되고 위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성애적 취향때문이거나 혹은 여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돌발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남성적 우위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고자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가해자들 역시 그냥 귀엽고 친해지려고 한 행동이지 성적 욕망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가 가해자일거라는 세간의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피해자 중 동성애자 남성들을 인터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차라리 가해자라고 하면서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동성애자인권운동가 친구의 충고였다. 또한 가해자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는 없었다. 모든 폭력의 원인은 단지 권력욕 혹은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밖에 꺼내지 못하면서 자신이 몸이 그때 반응했던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왜 성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문제일까? 가해자들은 그렇게 간단히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피해자들은 왜 그것을 피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걸 그토록 어려워하는걸까? 한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당하면서도 떳떳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다른 피해자는 당했다고 하면 더 비참해지니까 차라리 같이 즐겼다고 생각하는게 더 낫기도 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정체성의 고민을 시작하게된 피해자들은 피해와 정체성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하며 깊은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4.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폭력을 체화하는 것

피해 이후 후유증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에 익숙해지는 것 말이다. 피해 직후 증상에 대한 응답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대인관계나 군대생활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특히 남성간 강간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피해자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욱 큰 후유증에 시달린다. 한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정의하면 '비참해지고' 그렇다고 자신이 즐겼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자니 자신이 혹시 변태나 동성애자는 아닌지 고민된다고 했다.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편견과 비난은 더욱 남성간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남성간 강간의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은 여성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 성경험 자체가 비난의 원인이 되는 반면,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적인 성경험이 아니라고 말하기를 더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남성 피해자들은 정체성과 자신의 욕망과는 별개로 피해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이며 자신이 겪은 것이 피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성 강간피해자의 이처럼 깊은 수치심은 항문성교가 남성성(masculinity)을 훼손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남자가 항문에 강간을 당하면 체면만 잃는 것이 아니라 '여성화된 자'로서 시민적 권리까지 박탈당했다. 남성강간피해자들은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 사회에서 여성화된 자, 남성이 아닌 자, 혹은 동성애자로 낙인을 찍혀 공감이나 지원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병사들이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선택하는 행동은 그 행동들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부인(deny)과 자기 자신에게도 역시 가해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 들어온 다른 후임병들에게 투사(projection)이다. 이렇게 폭력의 체화(embodied)되고 사소화되면서 군대내의 남성간 성폭력은 악순환을 겪고 있다.

5. 피해자권리에 무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발생 이후 법적 사건처리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해결 과정은 법적, 제도적, 의식적 차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 한계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성폭력을 개인적 인권침해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사고'²⁾로 보는 관점이다. 성군기 문란, 또는 위반은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성군기문란"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남성간 성행위와 동의에 의한 남성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거의 차별 없이 처벌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군형법의 입법목적은 군기를 잡는 것이므로 성군기문란이라는 개념으로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들의 성적 권리 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동의에 의한 성행위와 강제적인 추행 혹은 강

간을 같은 맥락에서 추행으로 규정짓는 것은 군기문란 사고^③라는 관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서 성폭력의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인 '강제성'을^④ 기본 기준으로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의에 전제된 성행위에 대한 규정이 동성애에 한정되어 있어 동성애 편파와 차별을 드러낸다.

또한 군형법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에서 강간피해자를 부녀자로 국한하고 있고, 강간의 개념 역시 남성 페니스에 의한 여성 질에 대한 공격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 외국관련입법을 살펴보면 강간의 객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주 형법에서 남성을 포함시키는 추세이고, 영국에서는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에 따라 남성을 포함시켰고, 프랑스에서는 1980년 형법 개정으로 남성을 포함시켰으며, 독일에서는 1997년 제33차 형법개정으로 '부녀'에서 '타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미국 모범형법전은 강간죄의 '성교'가 구강·항문 성교를 포함한다고 했고, 영국의 경우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의 형법도 강간의 의미를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성기 이외의 것의 삽입을 포괄하며, 독일도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간음' 이외에 '유사한 성적 행위'를 포괄한다.

따라서 현행 군대내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법적인 차원에서는 남성간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에 포함시키고 남성간 성폭력에서 강간을 인정해야 한다. 군형법 상에서 합의에 의한 계간 처벌은 삭제해야 하고 남성간 성폭력과 동의에 의한 성행위는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형법을 개정해서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고, 행위유형에 간음뿐 아니라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기, 주먹성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계사회인 군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형법 상 추행죄를 입법한 것과 같이, 폭행·협박의 요건이 없거나 완화된 형태의 남성간 성폭력에 대해서 군형법 상 강간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⑤ 둘째,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경우 동성애와 동성간의 성폭력은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동성애 혐오의 문화 안에서 남성간 성폭력 피해자 혹은 가해자는 동성애자와 구분되지 않는다. 남성간 성폭력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남성간 성폭력을 질서유지나 성균기 문란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폭력의 개념을 관련지어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만이 성폭력이 아니라 성적 농담이나 장난을 성폭력의 연속 선상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성기삽입만이 성폭력이라는 인식은 성폭력을 관계의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성행위를 성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강간과 같이 극단적인 성폭력에

비해 성기 만지기, 포옹, 언어적 성희롱 등은 친밀감과 장난으로 용인하려는 군대 내 성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삼가도록 한다. 성추행에 대한 군법 처벌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올 수 있지만 성폭력의 개념 이해가 없이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미)주

1) 이 글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조사의뢰를 받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요약, 정리, 수정한 것이다.

2) 국방부에서 정의하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다음과 같다. “성군기 위반 사고란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기해 행위, 성적 접근, 성적 요구, 성과 관련된 인애나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에 의해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명예 실추를 초래하는 모든 성관련 범죄를 말한다.” 성군기 위반사고의 유형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성희롱 사고, 성 범죄 사고, 그리고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를 포함한다.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는 성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공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고 및 기기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성관련 사고를 말한다. * 성군기 위반사고는 일반적으로 기해자가 남성인 경우와 동성인 경우,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대해 기하는 역차별적인 성군기위반사고를 포함한다.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안내서, 2001 /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방지에 대한 지침」, 2001)

▶ 부대 내 사무실에서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 사무실에서 불건전한 성행위
- 인터넷 채팅이나 E-mail을 이용한 성적 대화 등 불건전한 행위와 이를 매개로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 사무실 전화, 개인전화(핸드폰)을 이용한 불건전한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 군숙소(공관, 관사 등)에서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 군 외부의 이상(직업여성을 포함)을 군 숙소로 유인해 불건전한 관계를 갖는 행위
- 상관, 동료, 부하의 군 숙소에서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사고 행위

각군의 지원부대(서)에서 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회식간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 사고

원조교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모든 성군기 위반 사고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 유형 (국방부, 앞의 자료, 2003, p. 11)

3) 성군기위반사고 관련법령

- 형법, 군형법,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법

친 고 죄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혼인빙자 간음, 미성년자 간음 등
비친고죄	강간 등 성해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특수 강간 추행죄(군형법)

* 친고죄의 경우,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파렴치 행위 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불가

- 징계규정(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각군규정)

· 징계회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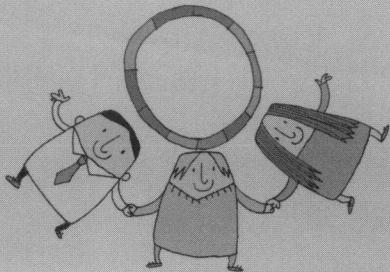
- 군풍기문한 부분에 해당되는 행위(인사법, 군인복무규율)
- 품위유지 위반: 성군기 위반행위, 사생활 방증, 군풍기 위반(육군 189 징계규정)

4) 판례도 군형법상 추행이 형법상 범죄에 대해 단지 폭행, 협박의 요소만 없는 특별법의 관계라고 설명하면서도 군사회의 기강 및 전투력 운운함으로써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990.3.30. 고등군사법원 99노31*)

5) 군형법상 강간죄를 신설하라는 주장은 형법에 규정될 남성간 강간이 현행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최혐의의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형법상 강간죄가 폭행, 협박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친고죄화 된다면 군형법에 별개의 조항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눔터

학술 II



그들의 명예에는 양심이 없다

명예훼손 역고소-가해자의 반격을 돋는 장치

이덕화 (前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16기 상담원)

1.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역고소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인데 가해자에게도 훼손될 명예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내가 피해자인데...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가 있을까...?”

“대자보 쓴 이후, 사람들이 나보고 심하다고 해요. 창창한 남자애 앞날을 망쳐놨다고... 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나 말고도 이미 여러 사람에게 그 짓을 저질렀어요.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텐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나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명예라는 걸 망치는 것인지 여러차례 생각해 봤어요... 많이 생각해봤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잘못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내게 되는 심정,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하는

피해생존자들에게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당부, 혹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단체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얘기,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 그리고 막상 사건이 공개된 이후 스스로에게 따라 올 2차적 공세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등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 사건지원자로서의 나의 모습이다. 피해생존자 만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실 법논리와 피해자의 현실에서 막막하고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 특히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무고·역고소들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때 가장 무력하다.

피해사건을 공개한 이후 가해자의 법적대응과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피해생존자들은 위의 따옴표 속의 말들로 호소하고 있다.

피해로 인해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걸어나와 피해자체를 말하고,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바램으로 어렵게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피해생존자들은 사건공개 이후 '가해자의 역공세', '사건의 경중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잣대', '가해자 인권담론의 모습을 한 피해자 비난' 등 피해상황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가해자 또한 인권을 가진 존재이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는 말들은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에게도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그간 상담현장에서 수 명의 역고소 피해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느끼게 되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의 권리를 비교해보는 얘기들이 현실에서 매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무고 역고소 등을 가해자에 의해 자신의 가해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나고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와 피해사건 지원자들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사실을 말해버리겠다'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자신이 범죄자임을 말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협박이 되는 사회인데, 피해자를 오히려 법적으로 고소하고 응징하겠다는 협박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제압이 될 것인지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자보로 공개한 것은, 단지 가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가해자의 온니을 돋는 사회 전체가 아니었을까.

역고소 사건이 현행 법 체제안에서 어떤 논리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도, 위와 같이 가해자의 역고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염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판례가 말하는 명예훼손의 공익성과 입증주체

최근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다. 대법원에서는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지원했던 총여학생회의 회장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2년 1월에 발생한 대학내 학생회장에 의한 성추행사건으로 당시 총여학생회에서 사건을 지원하던 중, 가해자 실명 대자보로 사건을 공개하여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당시 사건을 공개했던 총여학생회와 사건을 기사화했던 학보사 기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으며, 기자는 불기소, 총여학생회대표는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변 공익소송위원회를 통한 공익변론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상고심까지 확정되었다. 해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가해자의 사과, 합의 등의 사유로 기소 유예되었고, 학내에서는 징계처리되었다. 그리고, 가해자가 총여학생회장을 상대로 소송 한 명예훼손 건은 공익변호 선임,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적 노력이 있었으나, 최근 상고심을 통해 대자보를 통해 사건공개를 할 필요성에 비추어 가해자의 명예훼손침해 더욱 크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변론은 주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긍정적으로 전망된 부분도 있었으나, 결국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이 피해자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난 핵심에는 명예훼손 조각사유인 “공익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에 있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과 그 적용을 살펴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제307조)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다(제310조). 따라서 진실한 사실의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사건/가해자의 가해

사실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한 공익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가해자에 의해 역고소되었을 경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는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닳아 있음을 설득하게 되는데, 위의 해당사건의 경우도 공익성 여부와 그 정도, 가해자의 명예훼손이 된 정도와 공익의 정도가 공판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 법에서 보는 공익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대학사회에 만연된... 성폭력 사실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대자보 부착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대법원 2002.1.22, 2000다37524, 37531, 2000. 2. 11. 99도3048)

더욱이 명예훼손의 소송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 인지의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명예훼손을 주장할 정당성이 없으며, 부착행위는 공익성에 해당된다.(대판 2002.1.22, 2000다37524, 3753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대자보의 게재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의 명예침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그 표현의 주요한 동기 및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이한 사실오인이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2003도7395)

비슷한 두 사건이었으나 첫번째 판례에서 나타나듯 법에서의 공익성은 국가 또는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익성을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 두번째 판례에서는 반대로 공익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 공익인지 그리고 왜 공익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며 이로 인한 해석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누가 증명해내야 하는가.

또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었을 때 주되게는 가해자 입장에서 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는지를 주되게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고소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사

건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해내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게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28.)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을 고소했을 때 가해자의 가해사실 또한 피해자가 입증해내야 하고,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변명하고 설명해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사건에서 각각 정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사건에서는 피해 혐의자이고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가해자이지만,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사건에서는 피고소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다루어진다.

성폭력사건과 명예훼손을 둘러싸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겪는 이러한 이중의 현실을 보았을 때,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의 부당함, 그리고 피해자의 사건 공개 행위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은 현실과 별도로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를 밝히는 순간, 다른 어떤 범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피해에 대한 경시와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3차 피해를 감수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의한 2차 공격을 감내해야만 하는 절망스럽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애써 드러내고 말하는 것은, 말해야 하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이다.

3. 한번 더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

피해사실을 말하고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피해자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 이상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중요한 결단이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의 공개는, 성폭력 가해자와 가해사실을 은폐하는 우리사회의 부당함과 싸우는 작업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개개인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폭력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용납되어서는 안될 심각한 범죄임을 거듭 호소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얼마전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위의 대학 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동체 안에서 축소되고 은폐되기 쉬운 학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사건해결의 책임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학 내의 정책 수립, 공동체 구성원 전반의 의식변화 등을 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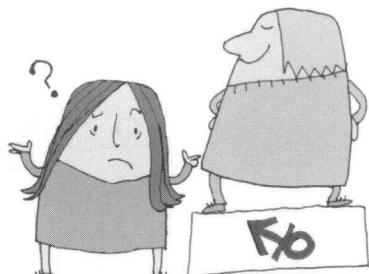
선진국의 대학내 반성폭력정책이 사건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개를 주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 공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수적으로 다수의 사람을 위한’ 공공성만이 아닌, “중요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나 이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 그러함에도 사회구성원 다수와 관련이 있는 이익이나 권리”로 해석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진정한 공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고 공개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조명되지 못했던 권리이자 진정한 공익일 것이다. 피해자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보여주고 성폭력을 계속 생산해내는 고리를 끊게 할 수 있으며, 공개이후 구성원들의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공동체의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역할 등 이러한 사실들에서 그 공익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공익의 의미 이외에 또한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근래의 명예훼손 소송들이 피해자 측을 입막음하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억압적인 이러한 상황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진정한 ‘법적 공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지금까지의 남성중심적 법해석의 잣대를 버리고, 진정한 혜안(慧眼)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옛 어느 여신의 머리에 있었다던 제 3의 눈, 혹은 포청천의 이마에 있었다던 달모양 표식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 제3의 눈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가치관만으로는 공정할 수 없음을 은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해자중심, 남성중심적 법해석의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가 발생하는 맥락과 법이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제 3의 혜안이 필요한 사정이다.



우리는 전시성폭력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한다.

김김보연 (본 상담소 성과 인권팀)

강간과 살인은 적의 육체를 지배하고 굴복하도록 하는
가부장제 아래 올로기의 일부다
- 대치아마라인 1994

남성의 계획된 공격/폭력을 강간이나 사지질단,
여성살해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난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전쟁상황과 폭력상황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나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적의 영역'을 침범하고 점령, 파괴하는 것을
바로 강간/여성살해하는
주제의 연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 대치아마라인 1998

캐터콜비츠<절망>



본 상담소를 비롯하여 반성폭력운동단체에서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한국군의 파병정책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하는 것에 대해 단체에서 언제나 하는 입바른 소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마도 성폭력 문제와 반전간의 연관성을 쉽게 떠올리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전쟁과 성폭력의 깊은 연관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쟁과 성폭력

여성들은 오래 전부터 반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왔다. 이는 여성들이 보다 더 평화적인 본성을 가져서라기보다는, 전쟁의 일차적 피해자이며, 폭력 앞에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노출되어 싸워온 또 다른 전쟁의 생존자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부여되는 합법화된 폭력의 특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은 합법화된 폭력의 희생자로 무고하게 죽어간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 포로 및 소수자들에게 참혹한 폭력이 가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이다. 이러한 폭력의 자행 속에서도 특히 성폭력은 적을 굴복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자 무기로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상 발생했던 모든 분쟁 및 전쟁 속에서 도처에 확인되어진다. 르완다 전쟁에서 3개월 동안 약 100만 명의 살상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여성으로 추정되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50만 명에 이르는 여성이나 소녀가 강간되거나 성적 고문을 받았다고 보고된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2만 명의 부녀자들이 강간 또는 강제 임신이 되었으며, 코소보 분쟁에서도 수백 명의 여성들이 '강간 캠프'에 몰아 넣어진 뒤 조직적인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아시아의 여성 10만 ~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을 경험해야 했다. (국제 앤네스티 한국지부 2004년 공개 문서 참조)

성별화된 지배방식과 폭력의 활용

이러한 전시 성폭력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가지는 잔혹한 폭력성이지만 이와 함께 이러한 성적 학대와 폭력이 문제를 가진 몇몇 군인들의 일탈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 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쟁시의 성범죄들은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여성을 강간하는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코소보와 보스니아, 알제리, 르완다 등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집단 성폭력과 강제임신은 상대국의 점령과 무력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자 전략으로서 자행되었다. 더불어 이번 미군의 이라크포로에 대한 성학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포



케테콜비츠<죽음, 여민과 사이>

로들을 무력화시키고 자백을 강요해내기 위해 성학대가 가해졌다.

우리는 최근 이라크 남성포로에 대한 성학대 사건에서 전쟁과 군대가 적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여성으로 취급하고 강간하기'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역으로 성적 학대 및 폭력이 얼마나 한 개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동시에 이러한 전쟁의 침략과 지배 방식이 남성이 여성의 존엄성을 지배하는 방식과 닮아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폭력의 피해 생존자로서의 요구

따라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성의 삶 속에서 같은 지배의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는 전쟁-가부장제와의 전쟁-에서의 피해 생존자로서 이와 같은 지배와 폭력의 방식이 극 대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목소리이다. 전쟁이 한 존재의 인간적 가치와 자아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증언이다. 폭력의 피해 생존자로서,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며 더구나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슬픔의 목소리이다.



* 다음은 지난 5월 12일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성학대를 규탄하고, 나아가 이라크전과 한국군의 파병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미군 및 영국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 미군의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 명분없는 한국군 파병 철회 촉구 !

최근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이라크 포로에 대해 미군이 가한 성학대를 '전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저항 불가능한 포로들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이 개인에 의해 발생된 행위라기 보다는 전시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용인, 활용되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전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2차대전 당시 아시아의 여성 10만~20만명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잔악한 전쟁범죄를 잘 알기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하는 이와 같은 전시 성폭력에 분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둘. 우리는 여성, 아동, 포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양산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이번 사태를 맟아 미국이 어떠한 명분도 없는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을 통해 국가적 명분과 대의 속에서 시민·사회적 권리 침해는 물론 인간됨 자체에 대한 권리침해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유린의 가장 근본적인 한 형태로 성폭력을 자행하였다.

폭력이 정당화되고 용인되어지는 전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포로,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저질러져 왔다. 즉 전쟁 자체가 용인된다는 것은 이번 이라크전에서 밝혀지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여성들은 이와 같은 폭력을 용인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해 반대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미국정부가 본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소극적 대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반인권적 폭력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셋. 우리는 반인권적 폭력만이 난무하는 이번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의 즉각 철회를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오직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발발된 전쟁일 뿐 어떠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는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심지어 이미 세계 각국에서 파병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추가 파병 논의는 더욱 그 명분과 논리를 이미 상실했다.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됨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조직적으로 발생케 하는 이번 이라크전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며, 묵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여성단체들은 미국 및 영국 정부와 한국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미국 정부 및 영국 정부는 본 사태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사과와 수습이 아닌, 이후 대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라.

둘째, 미국 및 영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포로 인권 침해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징단적으로 침해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한국 정부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4. 5. 1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소모임 동정 - 시끌벅적 재미나는 회원소모임들을 소개합니다.



등산 소모임

매 달 한번씩 주변의 산을 찾아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던 산행을 이렇게 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꺼리시는데 한달에 한 번쯤은 도시를 떠나 청량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산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챙기는 가장 손쉬운 습관 아닐까 싶어요.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산에 갑니다. 건강을 챙기는 습관, 한 달에 한번씩 우리 함께 해요~~



여성영화감상 모임

영화 '프리다' 감상 후, 한 회원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영화는 한 여성의 고통과 좌절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성의 삶(낙태, 결혼, 배반, 외도, 경제적 궁핍, 삶의 지향점, 성적 기호, 일 등등)이 불편한 데서 느끼는 고통, 신체적인 장애와 질병이 가져오는 고통을 프리다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혹은 타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의 고통, 장애는 무엇일까? 여성으로 느껴지는, 한 개인으로 느껴지는 고통과 그것을 극복, 실패 또는 적응해 온 과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

영화를 통해 회원들 자신이 느끼는 고통, 쾌락,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성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소모임은 매달 1회 진행됩니다. 여성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이구요, 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회원분들도 대환영입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돋기 위한 세미나 모임

다른 소모임과 달리 조금 학구적인 느낌이 든다구요? 예, 맞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화와 가부장적 문화에서 양산해 내는 여성의 상품화, 그 안에서의 여성의 고통 그리고 그 치유방안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고, 토론해보고 싶은 회원님은 꼭 한번은 함께 하시면 좋은 모임입니다. 그동안 성폭력에 관심은 있었지만,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돋고 싶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심 두려워하셨던 분들, 성폭력운동의 현장 속에서 함께 했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해 모르겠고, 어떻게 성폭력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바로 나 자신의 치유의 길을 걷고 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현재 10명으로 이루어진 첫 세미나모임이 꾸려졌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자원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끈끈한 애정으로 그들 나름의 성폭력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답니다.

앞으로 두 번째 소모임을 꾸려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로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모임에 목말랐다' 하시는 분들 꼭 상담소에 노크해주세요. 단, 커리를 읽고 같이 세미나할 시간적 여유는 필요한 거, 모두 아시죠?



상담현장 Q & A

Q&A 상담원으로서 성폭력피해상담을 받을 때,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한 정보를 구할 때, 생존자로서 법률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짚어보는 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에 대한 고소를 했을 경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하게 되는데, 1회 진술로 끝나기보다는 통상 몇 차례의 진술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증인신문시에 진술한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해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공판에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개정된 성폭력특별법(04.3.12 시행)에 의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 장애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의 내용은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함께 있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이 직접 자의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잘 지켜진다면 수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의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는 상황이고, 비디오 촬영으로 진술과정을 기록해 두었다 하더라도, 촬영본이 증거로 채택되는가 여부는 또 별도의 문제로 남게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거나 비장애인일 경우 해당조항이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판례로서는, 비디오진술자료를 증거로 인정한 판결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2004)

김김보연의 카툰



본 상담소 성과인권팀 활동가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상담현장에서 느껴지는 현행 법률에서 개정, 제정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봅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 소년법의 적용과 피해자 소외의 문제

정유석 (본 상담소 상담인권국)

최근 미성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상담을 종종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소년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소년법의 적용이 일관성이 없어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만 20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상정하고 범죄소년의 이익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막상 미성년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판단능력이 있고 보호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할때는 미성숙해서 안되고, 보호자인 부모에게 피해배상의 책임을 물을때는 가해자가 이미 판단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피해자들은 어떻게 피해에 대해 호소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더욱더 무기력해짐을 느낍니다. 여성주의 상담팀에서는 미성년 가해자 관련 사건들을 지원하면서 현행 소년법 자체의 문제와 그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차별시정을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 소년법과 관련한 소년법 개정 필요성과 소년법에 대한 처분 개선안이 인권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만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 아닌 행정법상의 복지처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법에 대한 보호조치의 중요성은 신체의 자유권 측면에서나 아동권리 협약의 권리사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피해자 상담지원을 하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은,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오히려 이로 인해 역으로 형사절차상 소외되고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 법적인 재제조치를 할 수 없어 예방교육이나 가해자교육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은 그간 형사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위의 경우와는 또 다르게,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해소년들이 일반 형법·특별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다뤄지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소년법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소년법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소년법의 권리보호에만

충실한 방식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점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의 피해사건에 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정보에 대한 검색은 물론, 공판 자체를 방청할 수 없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조문상에는 경우에 따라 판사가 재량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청을 요청하는 피해자측의 탄원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판검사를 통해 그나마 피해자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재판과는 달리, 심리자체가 단독판사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나면, 피해자측은 공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후 내려진 소년부의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측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을 통해 항고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측으로서는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다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소년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법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을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상담현장에서 접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가 법적 성인에 가깝고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나 피해로부터의 극복을 위한 조치들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년법은 형벌보다는 보호조치를 통해 범죄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식의 방안이 아니라 심리후 최종결정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피해로부터의 극복을 위한 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가해자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해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소년의 이익을 위한다는 소년법의 이념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역으로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 소년법에서의 범죄소년을 위한 보호조치는 단지 범죄소년의 권리확보를 넘어 실제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경우 범죄소년의 연령을 현실적으로 인정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와는 별도로, 혼행 소년법은 심리시 피해자측 입장, 소년부 송치 결정시와 심리후 최종판단시 피해자입장의 반영 등 피해자의 권리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 12세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나눔터 45호에 실려있습니다.

하진옥 선생님은 멋쟁이!



이번 호부터 상담소에서 업무에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책임상담원 선생님들을 차례로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첫 순서로 항상 뭔가 튜닝 스타일의 패션으로 상담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진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인터뷰하는 날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핑크색의 화사한 나시와 원색 니트로 과감히 연출하고 나타난 하진옥 선생님. 건강미 넘치는 선생님의 독특한 매력을 만나봅시다.



평소 상담소 내에서 선생님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알고 계셨는지? 원색이 상당히 강한 느낌인데? (웃음)

알고는 있다. 내가 특별히 튜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웃음) 옷을 고를 때 특별한 디자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색깔을 주로 보는 편이다. 주로는 벨간색과 분홍을 좋아한다. 원색 계열의 빨강, 남색, 연두, 분홍 등 남들은 잘 소화하기 어려운 색들을 주로 입는 편이다. 성격이 직선적이고, 주관이 강한 편이다. 평소에는 차분한 인데, 옷을 고를 때는 좀 과감해지려고 하는 것 같다. 남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 스타일이 생기는 것 같다.



현재 책임상담원으로 1년 넘게 활동을 해오셨다. 상담원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

원래는 청소년 상담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는 대학 후배를 만나, 성폭력전문상담원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교육을 받아보니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고, 딸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평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라 한주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상담원 활동을 하면서 처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긴다. 아직은 알아가는 과정이고, 혹시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자

INTERVIEW

신감은 아니지만, 고민이 깊어 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고민이 있다면 내 목소리가 너무 정돈된 톤이어서 인지 내담자들이 심리적 하소연을 잘 안하시는 듯 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한다.

❸ 상담활동을 하다보면 상담 중 쌓인 감정을 털어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럴 때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정말 그런 것 같다. 가끔 힘든 상담을 받고 나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무척 미안했다. 예전에 상담원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선생님이 샤워를 하면서 푼다고 하셨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내 일상이 안정적인 편이라서 집에 돌아가면 풀리는 편인 것 같다.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❹ 상담원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다. 내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더욱 애정과 관심이 가는 편이다.

❺ 상담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 받는 순간은?

내담자들의 말 한마디에서 힘을 받는다. 그냥 해주시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상담을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나 정말 마음이 풀린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낀다. 내담자들이 진심으로 하는 인사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뜻있는 것 같다.

❻ 다른 사람들(상근자, 상담원,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상담소에 힘을 주는 메시지 한 마디.

상담소의 경우 다른 단체나 직장과는 달리 공동체라는 느낌이 든다. 상담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나 아직은 일주일에 한번 가기 때문인지 모르는 게 많다. 상담팀 외에 다른 팀 활동가들하고는 아직 정이 깊이 들지 않은 것 같다. 워낙 바빠서인지 조금 소원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비롯해서 상담소 행사에도 자주 참여해서 서로 알아갈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책임상담원 활동에서 큰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는 하진옥 선생님. 선생님처럼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상담소도 또 내담자들도 더욱 힘을 내리라 기대합니다.



직장체험, 어땠나요?



상담소 입구에서
거북님과 양희님

지난 5월 29일에 개최되었던 “성폭력 균절 서포러즈가 되자”라는 행사를 보면서 외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다. 영상과 선전, 공연 등을 언제 다 준비했느냐는 거였다. 영상을 찍은 양희씨와 해사장 내부 장식을 담당한 거북씨는 모두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소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다. 현재 상담소에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5명의 활동가가 있다. 이중 두명의 활동가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나눔터 편집부

나눔터 : 상담소에서는 어떤 경로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양희(이하 양): 기획조직국장으로 있는 정하경애언니가 고마를 운영할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언니가 행사 준비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일하게 됐어요.

거북(이하 북): 저는 학교에서 총여활동을 마치고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어요. 그전부터 상담소에 대한 이미지가 (이상하게도) 좋은 편이라서요. (웃음)

나눔터: 두분은 상담소에서 하는 반성폭력 관련 활동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요?

북: 네, 학교때 성폭력 사건 지원을 하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그 쪽으로 많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양: 특별히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주변사람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단체에 대한 정보도 접하게 되고,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일정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눔터: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양: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일일 호프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일 호프 처음부터 초기 기획부터 같이 하게 되었어요, 가수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일들을 같이 기획하였어요. 기억에 남는 건 장소 섭외 때문에 돌아다니던거, 프로그램 기획회의와 촬영...행사때 비디오들에 대해 너무.. 반응이 좋아서 어리둥절 했어요. 재밌다보다는 컨셉에 맞는 느낌이. 1분영상의 경우에도 사람

들이 그냥 나와서 하는 것 보다 영상이 들어가주는게, 행사도 돋보이게 하고, 그 사람도 돋보이게 하는 컨셉에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 음. 제가 들어왔을 때는 호프 마무리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디스플레이하고 마무리 하는 일들을 했어요. 선전은 학교에서 처음 할 때는 어리둥절하게 했었는데, 학교에서 하던 것 이 몸에 베인 것도 있어서 좋아하게 된 일이기도 하죠. (연기를 하기도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 와서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나눔터: 학교에서 활동할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북: 공통점은 일이 참 많다는 것이구요, 그런데 학생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점이나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는 것. 총여같은 경우에는 학내 위치가 많이 겹치면서, 전문화 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도하는데, 상담소의 경우에는 전문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눔터: 상담소에 나오면서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양: 저는 경애 언니랑 차타고 다녔던 게 재밌었어요. 촬영다닐때도 그렇고, 장소 섭외 할때도 그렇고. 둘이서 많이 돌아다녔던게 그때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영상물 준비하면서 출연진 섭외와 수 많은 NG 장면도 생각나구요.

북: 저는요, 인상에 남았던 일은 수요집회 갔었던 일이 이에요. 처음 갔었기 때문에. 왜 이제야 처음 갔는지 잘 납득이 안되기도 했는데, 예전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서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우연히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수요집회를 돌아가면서 주관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할머니들도 나눔의 집 갔을 때 말고 밖에 나와 계시는 것을 처음 봤었는데, 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앞에 서서 여성운동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정신적 힘이 되어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존재구나 싶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목소리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만으로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눔터: 상담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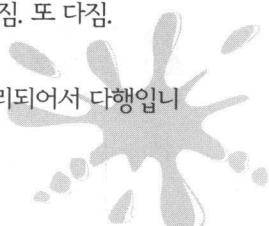
북: 제가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한계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족한 점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을 봤아보고 싶은 마음이.. 상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떻게 살지 방향을 잡게 되면 좋겠네요.

양: 사람들이 업무에 과중 되어 있어서 창조적인 생각들을 표출하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재능들은 있어 보이니까 더 안타깝죠.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그래서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자기 욕구를 풀 수 있는 문화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접목이 되다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상담소 활동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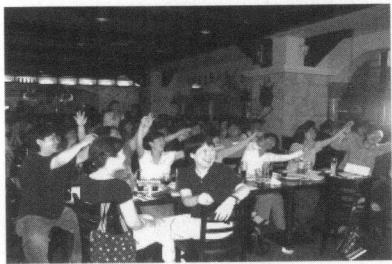
- 이제 상담소 상근 활동을 시작한지 반년을 훌쩍 넘기네요. 미숙한 모습에도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신 상담원 선생님들, 회원세미나 모임, 기금행사, 회원한마당 등을 통해 더욱 가까워 회원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반가움과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다양성과 활기로 빛나는 우리 상근활동가들과 더불어 더욱 여성들에게 득이 되는 에너지를 많이 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상담도 열심히!!
- 드디어 전화상담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 나눔터 원고 마감은 한 편의 드라마이자 전쟁이었다는...흑흑... 다음에는 주말에는 쉬게 해주세요.
- 언제나 하고 싶은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 봄날이 지났다. 벌써 여름이란게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함께 하는 회원님이 하나 둘 아니 그 이상으로 늘어가는 걸 보며 상담소가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느껴본다. 아. 올여름엔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았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 너무 아쉬워요. ㅠㅠ 어떻게든 다시 올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시구요.
- 약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번씩한 자원활동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를 알고자 봉사활동장소로 택했지만 많이 알지 못했고, 스스로 활발한 활동을 안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 놀라움과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단체는 작아보였지만, 알차보였고 상근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 위의 자활가분들과 좀 더 많은 시간 나누지 못해 으... 아쉬워요. 흄.. 왜 늘 지나고 나야 알게 될까요.
- 조는 걸로 보였겠지만 실은 ...실은 생각 중이었어요. 호호호. 구상? 동상? 망상? 상상? 어쨌든 난 선생님들한테 투자할 거예요.
-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운 것들만 가득이네요. 남은 한해 동안 열심히. 다짐. 또 다짐.
-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맘껏 배우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 새로운 모색을 위해 많이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웠는데 이제 많이 상황이 정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열림터 10주년을 기대해주세요~





이 깊었이 주는 나무

성폭력 근절 서포터즈, 우리 함께 시작해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지난 5월 29일 저희 상담소 기금 마련 문화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을 담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날 행사 주제는 '성폭력 근절 서포터즈 되기'였는데요. 함께한 많은 분들이(무려 60여명이나) 서포터즈(회원)이 되어주셨답니다. 대단하죠? 이 날 오신 분들은 성폭력 근절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의식에 공감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일상에서 느껴지는 피곤한 성적 시선, 음당파설,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나요?

성폭력을 없애는 일,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가 되고, 서포터즈 집단이 되어 손을 맞잡아 가면 성폭력을 뿌리 뽑고, 모두가 즐거운 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그 길을 걸어보자구요~~~

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나눔터〉를 보내드립니다.
- 상담소 발간 자료를 20% 할인해 드립니다.
- 상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강좌, 교육신청시 수강료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각종 상담소 행사에 초대됩니다
- 회비는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납부 방식

- cms 자동이체 – 금융결제원의 협조로 회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회비가 상담소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상담소에 알려주시면 매달 26일 약정하신 금액이 인출됩니다.
- 자동이체 – 회원께서 직접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상담소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 • 국민은행 009-01-1176-632 | • 외환은행 224-22-02532-8 |
| • 기업은행 216-013179-01-018 | • 조흥은행 308-01-133092 |
| • 농협 037-01-194301 | • 우리은행 441-04-107528 |

- 지로 납부 – 3개월에 한번씩 3개월 분의 지로가 연 4회 우편 발송됩니다.

위의 납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어 기획조직팀 김자선 간사(02-338-2890)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형구 고미경 고영신 고 진 꽈해영 권해수 김건태 김경진 김군자 김남수진 김민성 김상미 김선화 김상천 김소연
김승희 김순옥 김양지 김영미 김원경 김은경 김재민 김재원 김제민 김진태 김학실 김한선혜 남김유진 박미영 박보영
박소라 박윤미 박정미희 박정대 박준면 박지나 박현규 배효원 백희정 보 라 서순진 서용완 서태자 성자은 송미옥
심용선 양재무 어 라 오세희 원민혜 유 미 유정미 윤소정 윤수현 윤여숙 윤영란 윤영희 이경나 이고운 이민아
이새롬 이성현 이영미 이윤희 이주영 이주현 이자는 이해진 이향심 이해숙 임영림 장 건 장다혜 장순례 장혜순
전병화 전희경 정민기 정순희 정여진 정인숙 정현주 조령말 조계삼 조민지 조선주 조성천 조수현 조영경 조용주
조은영 조인섭 지 현 최광식 최선아 최아림 최예원 최진희 최태식 추정희 탄 뺑 표창원 패끼미디어 한덕훈 한경은
한민유림 한병규 한혜연 흥길표 조현재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람 강기원 강남식 강득록 강수연 강영순 강인화 강현정 계경문 고계영 고금이 고미경 고정남 고진규 구나은
구민지 권김현영 권수현 권순남 권정현 권주희 권혁건 권혜수 금철영 길종성 김강자 김경선 김경옥 김경현 김경희
김광진 김금란 김덕현 김동령 김동희 김두나 김둘순 김미경 김미경1 김미라 김미숙 김미숙1 김미애 김미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지 김병숙 김보연 김시라 김삼화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주 김성득 김성신 김성천 김세중 김소명
김송희 김숙희 김순옥 김순자 김순형 김언정 김엘림 김연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애 김영정 김옥선 김용란
김용자 김원경 김원식 김윤경 김은미 김웅진 김의창 김인옥 김일윤 김재원 김정이 김정희 김주희 김준호 김자선
김지연2 김지윤 김지혜 김진만 김진희 김진희 김태경 김하연 김해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식 김현정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2 김혜련 김혜숙 김혜정 김혜정2 김화영 김효선 김희경 나길희 남우희 남정현 남현미 노미선 노미순 노주희
도순아 류수진 류인경 맹주현 문강진 문해란 문효진 민현경 박경실 박경화 박내현 박미경 박미술 박미향 박선희
박성근 박소연 박순복 박신우 박윤숙 박은숙 박정옥 박정희 박종선 박지영 박지현 박진성 박진숙 박진숙2
박창은 박현순 박현주 박혜영 박혜진 방상희 배은경 배희진 변계희 변혜정 상목스님 서명선 서민자 서백영희
서성준 서정표 설연자 성시녀 손경희 손명숙 손수경 손이전 손종성 송문숙 송미옥 송선옥 송성애 송수영 송영훈
신동현 신상숙 신상호 신선애 신성희 신숙희 신은주 신정해 신희경 싱글여성모임 심창교 심혜련 안경희 안 민
인재훈 안철민 안현운 양애경 양연주 양영희 양재부 양효준 어 라 엄경출 엄구용 엄인숙 여영자 오길향 오숙희
오유지 오은순 오태형 오현숙 오희선 오희옥 옥민영 우안녕 원순경 원형섭 유경숙 유병석 유성혜 유은주 유인숙
유현광 육향순 윤명화 윤선화 윤숙경 윤애리 윤양현 윤영규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윤형흔 이경로 이경미 이경아
이경이2 이경애 이경애 이경은 이근혜 이금형 이나미 이나화 이덕화 이명숙 이명자 이미경 이미정 이민영 이민희 이백수
이상근 이상미 이상은 이새롬 이석민 이선숙 이상수 이상제 이소림 이소영 이수명 이수자 이순순 이아란 이어진
이연실 이영분 이영식 이영애 이영표 이옥희 이유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희 이은미 이은상 이은애 이은정
이인희 이재인 이정순 이정아 이종란 이종환 이자선 이창윤 이철현 이준미 이푸른매 이해득 이해진 이현숙 이해경
이혜숙 이혜숙2 이호숙 이호진 이효숙 이희영 이희화 임복선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임주희 임홍섭 장 진 장순복
장윤경 장윤정 장철우 장필화 장혜순 전민숙 전성혜 전유경 전홍석 전희진(김환수) 정경애 정교화 정금자 정남운
정대현 정문영 정민기 정신애 정연배 정영석 정영선 정옥실 정유석 정유순 정은선 정은숙 정인희 정정희 정혜련
정호성 조경희 조계삼 조민우 조소연 조수현 조수희 조영석 조용주 조은숙 조은희 조인옥 조재학 조중신 주명희
지인순 차성안 차혜령 채우리 채지수 채현숙 천정환 최경식 최광식 최금희 최기홍 최동석 최명현 최보원 최선규
최선열 최성호 최양렬 최영애 최옥경 최용득 최윤수 최윤정 최은경 최은미 최은순 최정운 최지녀 패끼미디어 표창원
하은주 하진옥 한기모 한덕훈 한보경 한상희 한재철 하은주 흥기선 흥만희 홍보연 홍성복 홍숙기 홍순기 홍윤기
홍은정 황성기 황순경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나눔터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무형 김정민 박귀임 배효원 윤은소 이정은 전희경 조현숙 한민유림 한정화

상담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평생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n

강정자 강학중 고정님 권윤진 김경현 김정희 니콜라 변혜정 안형정 이명선 이미경 이병규 이상구 장필화 정경자
정재정

엄마가 되어 엄마를 알았습니다

저를 놓고 많이 웃었다 하셨습니다.

밤 늦은 귀가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 갈 때면 조심하라는 말을 몇 번도 더 하셨습니다.

결혼식 내내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에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놓고 가장 크게 웃어 주셨습니다.

엄마의 활활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된 오늘, 엄마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아파서 저를 놓았고

당신이 주어서 제가 가졌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 보는 것처럼

저도 엄마를 기쁘게 보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Bravo your Life!

삼성생명이 어머니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본 상담소집별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베풀복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별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4만 1천여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부설〈열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 상 담 ☎ (02) 338-5801~2 ■ 인터넷 상담: ksvrc@chol.com
■ 열림터 ☎ (02) 338-3562 FAX : 338-1007 ■ 하 담 ☎ (02) 338-3563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어린이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성교육 지도자 교육/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의뢰 문의 ☎ (02) 338-2890~2

- 이사장 김삼화 ■ 이사 김삼화 문해란 이명숙 이미경 이백수 이우정 장철우 최영애 최보원 표창원 홍순기 ■ 감사 회계사/ 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 교육 교사/김성애 백영애 교육학/김인수 서영곤 정유성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저널리스트/박미라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조국 김엘린 변호사/강기원 고민진 고순례 김삼화 김의창 김재련 남성렬 박성호 박찬운 손명숙 윤영규 이명숙 이백수 이우정 이지선 이창윤 이향아 임종인 장경호 장철우 정성광 정연순 천정환 최은순 최현희 경찰/김강자 이금형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상담심리학/권혜수 김순진 김정규 이윤로 이장호 이해성 장연길 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이원숙 한인영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정영숙 법의학/강신동 권일훈 문국진 서종석 이경룡 이윤성 최영식 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김홍배 문영규 민웅기 박금자 박종민 손인숙 안명숙 윤경 윤연정 이길여 이신애 이옥주 임용택 정경원 조삼현 조정현 최보원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신의진 최보문 임태식 외과/오세민 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응급의학/원형섭 임상병리학/강정숙 문해란 정신과/김광일 김병호 김정일 남정현 박수용 박진생 양창순 유재혁 이해현 이호석 윤영민 이수경 전지홍 조맹제 최진숙 치과/이상엽 안준영 한의학/강명자 김영권 김영선 김효선 서은미 이은미 호흡기내과/ 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 임종은 · 정보사업자 김형준 윤영민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응숙 최선열 여성학/박혜란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건 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강명구 김양희 김훈순 원용진 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국제협력/김선영 김사강 김사라 니콜라 박선미 안연선 이성숙 정경자 ·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변혜정 사회복지학/권진숙 이원숙 사회학/김준호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이명선 이재경 장필화 조주현 임순영 차옥덕 이경미 김지혜 철학/이상화 정대현 아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선욱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소장 이미경